

포 향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752호 2009. 10. 27(화)

선	기 관 의 장
람	

포 향 시

- 시장지시사항..... 2
- ◀ 규 칙 ▶
-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(제524호) 4
- ◀ 고 시 ▶
- 포항 도시관리계획(항만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제2009-95호) 6
- ◀ 공 고 ▶
-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(폐차)공고(제2009-1093호) 8

회								
람								

시장 지시사항

- 2009. 10. 26(월) 간부회의 -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10,26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옥 슬로우시티 체험행사 확대를 검토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금의 가을철 위주 체험행사에 여름철에도 추진 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. ○ 동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 ○ 헌수(獻樹)운동 적극 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헌수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되, 특히 홍보활동을 극대화 하여 성과를 거양하기 바람. - 사회단체 등과 공동 주관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보기 바람 ○ 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아래사항 이행 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서별 행사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자치행정과의 검토를 받아 추진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이와 관련 공문을 생산하는 등 조치를 마련할것. - 홍보용 보도자료 등은 공보담당관실을 통하여 사전 선거법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. ○ 오천, 흥해 장옥사업 추진 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천, 흥해장옥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조속히 완료 하기 바람. ○ 쌀 소비운동 적극 전개하기 바람. 	<p>농축산과 (농업기술센터)</p> <p>전부서 (자치행정과)</p> <p>도시녹지과</p> <p>전부서 (자치행정과) (공보담당관실)</p> <p>경제통상과</p> <p>농축산과</p>

부시장 지시사항
 - 2009. 10. 26(월) 간부회의 -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10. 12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불감시원발대식 행사 준비 철저 - 시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준비하기 바람. ○ 감사자료 제출시 협조 철저 - 도(道)정기감사와 관련 감사자료 제출시는 감사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 제출토록 바람. ○ 새마을기념관 자료 보완 조치 - 새마을기념관 자료 보완시에는 구미, 성남연수원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. ○ 동절기(겨울철)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철저 - 동절기 종합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(도로노면, 폭설, 농가시설물, 저소득계층 등) ○ 세외수입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. - 세외수입에 대하여 문제 및 탈루 등이 없는지를 일제점검하기 바람. ○ 세수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 추진 ○ 도민체전 예산반영 철저 - 도민체전 예산 수립 및 반영에 철저를 기할 것. (특히, 꽃길가꾸기 정비사업, 환경정비 등) ○ 보도자료를 많이 내도록 할것. ○ 선거법 위반사례 없도록 점검 철저. - 간부공무원은 업무추진 및 행사 등에 선거법위반 사례가 없는지 챙겨보기 바람. 	<p>농축산과 (남·북구청)</p> <p>전 부 서 (감사담당관실)</p> <p>새마을봉사과</p> <p>전 부 서 (자치행정과)</p> <p>전 부 서 재정관리과</p> <p>재정관리과감사 담당관</p> <p>체육지원과 기획예산과</p> <p>전 부 서</p> <p>전 부 서</p>

규 칙

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09년 10월 27일

포항시 규칙 제 524 호

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제3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「담배사업법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,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(이하 “시행규칙” 이라 한다)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)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- 2.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(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, 창문·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)

- 가. 약국, 병·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
- 나. 게임장·문구점·만화방 등 청소년(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)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. 다만, 슈퍼마켓·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다.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

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가. 역·공항·버스터미널·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
 - 나. 공공기관·공장·군부대·운동경기장 등의 시설
 - 다. 유원지·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
 - 라.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- 마. 백화점·대형마트·쇼핑센터 등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3호에의한 대규모점포
 - 바.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중 슈퍼마켓은 165제곱미터 편의점등은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

사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(관광지의 지정 등)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
아. 기타장소: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·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
및 건축물의 신축·개축으로 인하여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
인정되는 장소

2.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,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
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이 지정대상
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.

3. 소매인 지정 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3조제1항제2호와 같다.

4. 제1호 아목의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. 지정소매
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
설치 할 수 있으며,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
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.

제4조(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) ①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「도로교통
법」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·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.
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(출입구가
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)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.

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,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,
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.

③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.

④ 제3조의제1항과 제2항의 영업장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단, 제3조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1
호 라목의 건축물 1층에 있는 소매인 신청 점포의 출입문이 보도와 접해 있는 경우 및 바목의 소매인과는
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)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기간은 7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
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, 구내소
매인은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.

- 1. 제정이유
 -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- 2. 주요내용
 -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와 소매인 지정의 부적당한 장소, 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하여 규정함. (안 제3조)
 -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함(안 제4조)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09 - 95호

포항 도시관리계획(항만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포항시 남구 송도, 북구 항구, 동빈동 일원의 포항 도시관리계획(항만세부시설)의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09년 10월 27일

- 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중 항만시설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결정
 - 또한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
- 2. 도시관리계획(항만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
 - 가. 항만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 경	1	항만		항구동, 동빈동 송도동 일원	754,676		754,676	1973.7.2 (건고 제275호)	

나. 항만세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항만시설	기본시설	방사제	송도동 253-56제	950	-	950	1973.7.2 건고 제275호	L=190m
기정	"	"	호안	송도동 공유수면	337	-	337	1973.7.2 건고 제275호	L=337m
기정	"	"	방파제	항구동 341 외 해면	8,578	-	8,578	1994.10.20 포항고 제375호	
기정	"	"	물양장	동빈동 148-3	15,420	-	15,420	1973.7.2 건고 제275호	L=1,380m
기정	항만시설	기본시설	안벽	항구 동빈 송도동 공유수면	33,421	-	33,421	1993.3.16 경북고 제92호	L=1,161m B=15H
기정	"	지원시설	업무용시설	항구동 58-6	4,215	-	4,215		
기정	"	기능시설	여객터미널	항구동 17-13	34,763	-	34,763	1994.10.20 포항고 제375호	
기정	"	"	저유소	송도동 253-55	17,005	-	17,005		
기정	항만시설	기능시설	저장고	송도동 253-55	8,361	-	8,361		
기정	"	"	창고	송도동 산1-73	4,217	-	4,217		
변경	"	"	수산물위판장	송도동 공유수면	6,000	-	6,000	2008.8.7 포항고 제91호	어선부두 및 배후부지
변경	"	"	급유시설	"	1,500	증 900	2,400	2008.8.7 포항고 제91호	"
변경	"	"	냉동·냉장시설	"	2,800	-	2,800	2008.8.7 포항고 제91호	"
변경	"	"	수산물가공공장	"	650	-	650	2008.8.7 포항고 제91호	"
변경	"	"	폐수처리시설	"	650	-	650	2008.8.7 포항고 제91호	"
변경	"	"	활어보관시설	"	900	감 900		2008.8.7 포항고 제91호	"
변경	"	"	주차장 및 도로	"	5,380	-	5,380	2008.8.7 포항고 제91호	"
변경	"	"	지역특산품등 판매장	"	2,500	-	2,500	2008.8.7 포항고 제91호	"
기정	"	지원시설	보관창고	항구동 58-62	1,480	-	1,480	2008.8.7 포항고 제91호	화물부두 (천일화물)
기정	"	"	보관창고	항구동 58-61	1,811	-	1,811	2008.8.7 포항고 제91호	화물부두 (대한통운)
기정	"	"	항만종사자 휴게소	항구동 58-64	510	-	510	2008.8.7 포항고 제91호	화물부두
변경	"	"	업무용시설	항구동 58-63	3,920	증 225	4,145	-	해양환경 관리공단
변경	"	기본시설	도로	항구동 58-65	2,045	감 225	1,829	-	화물부두
기정	"	지원시설	업무용시설	동빈동 981-7 일원	1,922	-	1,922	2008.8.7 포항고 제91호	항운노조 및 어민대기실
기정	"	"	업무용시설	동빈동 981-1 일원	670	-	670	2008.8.7 포항고 제91호	해경파출소
기정	"	항만 친수시설	해양공원	동빈동 981-1 일원	3,863	-	3,863	2008.8.7 포항고 제91호	산책로, 조경
기정	"	"	해양공원	동빈동 148 일원	3,858	-	3,858	2008.8.7 포항고 제91호	산책로, 조경 매점등

다. 항만세부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시설명	시설의 세분	변경 내용	변경 사유	
항만시설	지원시설	업무용시설	A = 3,920 → 4,145 (증 225)	화물부두 지번부여에 따른 면적오차의 정정을 위해 변경
	기본시설	도로	A = 2,054 → 1,829 (감 225)	
	기능시설	급유시설	A = 1,500 → 2,400 (증 900)	활어보관시설은 수산물 위판장내 설치예정사항을 반영 및 급유시설은 접안시설 협소로 인한 이전에 따라 변경
	기능시설	활어보관시설	A = 900 → 0 (감 900)	
	기능시설	수산물위판장	면적의 변경은 없으며, 위치 변경	
	기능시설	냉동·냉장시설	"	급유시설면적 증가 및 활어보관시설의 폐지로 인하여 주변시설물의 위치 변경
	기능시설	수산물가공공장	"	
	기능시설	폐수처리시설	"	
	기능시설	주차장 및 도로	"	
기능시설	지역특산품 등 판매장	"		

3. 도시관리계획(항만세부시설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: 붙임 도면과 같음(도면 실음 생략)

4.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남북구청 건축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(☎054-270-346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포항시 공고 제 2009 - 1093호

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(폐차)공고

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처리(폐차)됨을 알려 드립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09. 10. 22.

1. 공 고 기 간 : 2009. 10. 22. ~ 2009. 11. 04. (14일간)
2. 권리행사기간 : 2009. 10. 22. ~ 2009. 11. 04. (14일간)
3. 보 관 장 소 : 포항종합폐차장 【(054)-285-4040】 대원종합폐차장 【(054)248-8282】
4. 폐 차 예 정 일 : 공고기간 종료 이후
5. 문 의 처 :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 ☎(054)270-3643
6.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.
7. 강제처리대상차량 : 붙임 내역참조

무단방치이륜차 내역 및 차량사진



차량번호:번호판없음

방치위치: 포항 북구 죽도동 635-5(꽃동네맨션 안)

보관장소:포항종합폐차장: 전화 285-4040

소유자 : 미상

- 방치차량 : 1대
- 상태 : 번호판 없음. 형태는 불량
- 방치장소 : 포항시북구 죽도2동 635-5(꽃동네 맨션)
- 방치기간: 2009. 5월 20일경 부터

무단방치 이륜차 내역 및 차량사진



차량번호 : 번호판없음

방치위치 :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4리 양조장뒤 담배가게 앞 노상(구룡포지구대에서수거)

보관장소:포항종합폐차장: 전화 285-4040

소유자 : 미상

- 방치차량 : 1대
- 상태 : 번호판 없음. 형태는 불량
- 방치장소 : 구룡포4리 양조장뒤 담배가게 앞 노상
- 방치기간 : 2009. 6월6일경 부터

무단방치 이륜차 내역 및 차량 사진



차량번호 : 2대중1대 번호판 유 1대는 번호판없음

방 치 위 치 : 포항시 남구 대도동 남부탕 앞 노상(상대지구대에서수거)

보관장소 : 포항종합폐차장 : 전화 285-4040

소유자 : 미상

- 방치차량 : 2대
- 상 태 : 2대 (1대 포항 다 8413, 번호판없음 차대번호VS125F1009997) 형태는 불량
- 방치장소 : 두호동 관내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수거 보관중
- 방치기간 : 2009. 9월4일경 부터

무단방치이륜차 내역 및 차량사진



차량번호 : 번호판없음

방 치 위 치 : 포항시 북구 죽도동 71-5(다음빌 내)

보관장소 : 포항종합폐차장: 전화 285-4040

소유자 : 미상

- 방치차량 : 1대
- 상 태 : 번호판 없음. 형태는 불량
- 방치장소 : 죽도동 71-5(다음빌내)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수거 보관중
- 방치기간 : 2009. 8월2일경 부터

무단방치이륜차 내역 및 차량사진



차량번호 : 번호판없음

방치위치 : 포항시 북구 양학동 경성양학마을 아파트지하주차장

보관장소 : 포항종합폐차장 : 전화 285-4040

소유자 : 미상

- 방치차량 : 1대
- 상태 : 1대 번호판 없음. 형태는 불량
- 방치장소 : 양학동 경성양학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수거 보관중
- 방치기간 : 2008. 7월24경 부터

무단방치이륜차 내역 및 차량사진



차량번호:번호판없음

방치위치: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3-7 에리카-B동 주차장내

보관장소 : 대원종합폐차장 : 전화 248-8282

소유자 : 미상

- 방치차량 : 1대
- 상태 : 1대 번호판 없음. 형태는 불량
- 방치장소 : 장성동 에리카 -B동 주차장내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수거 보관중
- 방치기간 : 2009. 4월경 부터

무단방치이륜차 내역 및 차량사진



차량번호 : 번호판없음

방치위치 :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882-1 국도7호선에서28번국도진입차선 노면

보관장소 : 대원종합폐차장 : 전화 248-8282

소유자 : 미상

- 방치차량 : 2대중 좌측오토바이
- 상태 : 번호판 없음. 형태는 불량
- 방치장소 : 흥해읍 성곡리 882-1 국도7호선에서 28번국도 진입차선 노면
- 방치기간 : 2009. 9월3일경 부터

무단방치이륜차 내역 및 차량사진



차량번호:번호판없음

방치위치: 포항시 북구 우현동 94-8대동우방관리사무소 뒤편)

보관장소:대원종합폐차장: 전화 248-8282

소유자 : 미상

- 방치차량 : 1대
- 상 태 : 1대 번호판 없음. 형태는 불량
- 방치장소 : 북구 우현동 대동우방관리사무소 뒤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수거 보관중
- 방치기간: 2008. 9월경 부터